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96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김영호 · 김원이 · 김문수
박성준 · 문정복 · 박홍배
이광희 · 진성준 · 김태년
민병덕 · 허 영 · 박상혁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초·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 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우려를 고려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2025년 8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동시에 교사가 다양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자료를 수업에 활용해 효과적인 학습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의 용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공지능 디바이드(AI Divide)를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정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학생 및 농어촌학교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은 인공지능 교육에서 소외될 우려가 큰 상황으로, 모든 학생들이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과 기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한편,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짧은 영상 및 이미지 중심의 정보 소비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문해력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사회적 소통 역량 등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의 근간인 바 공교육 내에서 이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아울러 실제 시도교육청에서도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맞게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체계를 갖추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한시적으로 연장,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시도교육청의 정책 사업 수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한시적·집중적 지원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

이 심화되는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의3,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을 “절차”로 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 지원 사업 등 학교의 디지털 기술 기반 수업 지원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학습지원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교육 지원 사업 등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 -- <u>2029년 12월 31일</u> ----- ----- ----- ----- ----- -----.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4.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u>	<u>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u>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
요한 때

<신 설>

<신 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
용한 수업 지원 사업 등
학교의 디지털 기술 기반
수업 지원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라. 「초·중등교육법」 제28
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
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
교에 다니는 학생, 「장애
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학습지원을 위
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
는 때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 학생의 문해력 향상
을 위한 독서교육 지원 사
업 등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u>절차</u> 및 <u>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u>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u>2026년</u>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 ----- <u>절차</u> ----- ----- ----- -----.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u>2029년</u>----- -----.
---	--